출자회사관리규정

제정 2014. 10. 1 개정 2015. 12.31 개정 2017. 12.20 개정 2020. 09.04 개정 2023. 12.28

[전략기획처 기획예산부 042-600-8196]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출자한 회사(국내 및 해외 포함)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 및 성장발전과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출자회사의 설립 및 청산 등을 포함하는 사업의 변경·조정에 관한 사항은 투자관리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20.09.04.>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자회사" 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)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.
- 2. "관리부서" 란 공사의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회사를 관리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.
- 3. "운영부서" 란 출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주관하며 출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4. "관계부서" 란 관리부서 및 운영부서 소관 업무 외에 출자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 (적용범위 및 대상) ①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 - ②이 규정은 공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원의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출자회사의 정책결정에 사실 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한다. 단, 제16조 경영진단에 대하여는 모든 출자회사 에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4.>
 -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 등 관리수단을 사전에 사업계획 또는 협약에 반영하여야 하며, 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출자회사의 자율성 보장) 공사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.

제2장 관리 및 경영에 관한 사항

제5조 (출자회사 설립절차) 삭제 <2020.09.04.>

제6조 (관리의 범위)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출자회사를 관리한다.

- 1.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의사항
- 2.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경영계약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
- 5. 재무제표 검토 및 외부회계감사기관 선정(해외출자회사의 경우)
- 6. 대규모 자본지출(출자 및 출연 포함)
- 7. 중요자산의 거래(건별 상한가액을 정하여 사장에 위임가능)
- 8. 정관의 변경, 내규의 제정과 변경(윤리강령, 전사적 위험관리, 준법 및 내부통제에 관한 내규와 그에 준한 지침 등은 반드시 포함한다)
- 9. 출자회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9.04>
- 10. 기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 및 그밖에 공사가 출자회사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규정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.
- ③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 시에도 특별채용에 관한 기준 및 자격요건을 마련한 인사규정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.
- ④출자회사는 인사, 보수, 징계, 계약, 예산, 회계 및 기타 내부규정을 설정·운영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공사는 출자회사 내부규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4항의 내용과 어긋나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다.
- 제7조 (관리부서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회사 관리업무는 공사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부 서가 운영부서 및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.
 - ②관리부서는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제반 실무를 총괄하며,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.
- 제8조 (부서간 협력) ①공사 내 모든 부서는 출자회사 관리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출자회사 관리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 서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- 1. 관리부서에서 출자회사 관리업무 수행 상 운영부서 및 관계부서의 자료나 의견 등을 요청한 경우
 - 2. 관리부서가 출자회사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정보를 운영부서 및 관계부서가 보유할 경우 운영부서 및 관계부서는 이를 관리부서와 공유하여 출자회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출자회사에 대한 운영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출자회사 설립 및 폐지, 지분 정리, 지분 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

- 2. 출자회사 수행사업 주관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출자회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출자회사에 대한 관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출자회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
- 2. 출자회사 인사, 보수, 징계, 계약에 관한 업무 지원
- 3. 기타 출자회사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지원
- 제9조 (주주총회 및 이사회) ①출자회사는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·출연 또는 채무보증과 관련 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와 협의해야 하며, 제6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즉시 공사의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.
 - ②관리부서는 출자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출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사로부터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공사 직원을 통해 공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.
- 제10조 (경영목표) ①공사는 출자회사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.
 - ②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년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공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4.>
 - ③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의한 경영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11조 (사업계획) ①공사는 출자회사의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출자회사 에 통보한다.
 - ②출자회사의 사업계획은 경영목표, 예산총칙,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, 자금계획서로 한다.
 - ③출자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임원의 추천) 출자회사의 임원 선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 정한다.
- 제13조 (임원에 대한 권리행사) ①출자회사의 임원이 역할 수행에 있어 불성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부당한 손실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출자회사 장에게 임기 중이라도 해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출자회사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 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(요구)을 행사할 수 있으며, 비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경영계약 및 경영평가) ①공사의 사장은 제3조 2항의 출자회사 사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성과급 산정 등을 정하는 사장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. ②사장경영계약의 세부사항은 경영계약서에 의한다.
 - ③경영실적 평가방법은 관리부서가 정하되, 출자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, 능률성, 공익성 및 윤리성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.

- ④공사의 사장은 제3조 2항의 출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, 출자회사 주주총회에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해임 또는 계약 해지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⑤공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제4항의 조치결과를 정부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정부 지침 등에서 출자회사 경영실적 평가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제15조 (중·장기경영계획의 수립) 삭제 <2020.09.04.>
- **제16조 (경영진단)** ① 담당부서는 모든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연 1회 경영진단을 실시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회사
 - 2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
 - 3. 정리 및 청산 진행 중인 회사
 - ② 운영부서는 매년 4월까지 제1항의 출자회사에 대하여 별표1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.
 - ③ 관리부서는 운영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관리대상 출자회사로 지정한다.
 - 1. 3년 연속 적자 회사
 - 2. 3년 연속 부채비율 200%이상(자본잠식 포함) 회사
 - 3. 경영진단 결과 자체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④ 관리대상 출자회사의 운영부서는 매년 5월까지 해당 출자회사의 부진사유,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경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.
 - ⑤ 관리부서는 출자회사의 운영실적, 경영진단결과 및 개선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 부에 제출한다.
 - ⑥ 관리부서는 별표2의 조치방향을 참조하여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관리규정의 사업조정 절차를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0.09.04.]

- 제17조 (대출약정 및 투자수익약정) 출자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성(PF) 대출 시 PF 대출약정은 출자지분비율 이내에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, 출자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여서는 안된다.
- 제17조의 2 (경영성과 등 보고) 공사는 출자회사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산업자원부와 기획 재정부에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하며, 출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부실할 경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20.>
- 제17조의 3 (대규모 내부거래) 공사는 출자회사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」상의 "대규모내부 거래"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0.09.04]

제3장 출자회사관리위원회

- 제18조 (출자회사관리위원회) ①관리부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출자회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다.
 - ②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1호의 경우 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고,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출자회사관리위 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삭제 <2020.09.04.>
 - 2. 출자회사의 정관, 주주총회, 이사회, 사장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
 - 3. 출자회사 내부 규정의 제정 · 개폐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출자회사 경영목표에 관한 사항
 - 5. 출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및 그 환류에 관한 사항
 - 6. 출자회사의 예산에 관한 사항
 - 7. 출자회사 경영진단 결과보고 <신설 2020.09.04.>
 - 8. 기타 출자회사 관리 ·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19조 (위원회의 구성 등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- 1. 위원장 : 관리부서 업무 해당 본부장
 - 2. 위 원 : 관리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
 - ②위원회의 간사는 출자회사 관리업무 담당부장이 된다. <개정 2020.09.04.>
 - ③출자회사의 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20조 (소집 및 의결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삭제 <2023.12.28.>

제4장 예산 및 회계와 감사

- 제21조 (예산) ①출자회사의 예산은 예산총칙,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. ②출자회사는 관리부서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제10조에 의한 경영목표에 따라 편성·확정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.
- 제22조 (회계연도) 출자회사의 회계연도는 공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23조 (회계원칙) 출자회사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제24조 (감사) ①공사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공사는 출자회사의 업무·회계 및 자산현황 등을 검사하거나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,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출자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5조 (전출 또는 겸직 등)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임직원을 해외 출 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하거나 해외 출자회사로 전출시킬 수 있다.
 -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겸직 또는 전출 임직원이 관계 법령, 정관 기타 제반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③제1항에 따른 전출 직원은 출자회사 운영지원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공사로의 보고업무를 수행하며, 전출직원의 처우 및 인사평가는 각각 취업규칙 및 공사가 별도로 정한 방침에 따른다.
 - ④공사의 퇴직임직원이 공사가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7.12.20>
- **제26조 (직원의 연수)** 공사는 출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의 교육훈련부서에서 출자회사의 직원을 연수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출자회사가 부담한다.
- 제27조 (임원의 임면 및 보수) 출자회사 임원의 임면 및 보수는 공사와 협의를 거친 후 출자회사 이사회의 심의·의결로 확정한다.
- 제28조 (공정거래원칙 등) ①공사와 출자회사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,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공사와 출자회사가 상호이익을 위해 공동연구개발, 기술제공, 합작투자 등 협력관계를 조성 할 경우에는 상호 대등한 조건과 공정한 가격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29조 (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) 공사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0.09.04]
- 제30조 (기타) 기타 출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출자회사관리지침은 폐지되며,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출자회사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출자회사관리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출자회사 경영진단 체크리스트

진단항목	세부내용	진단기준 및 방법				
1. 출자회사 성과의 적정성	•출자목적과 관련 된 주요사업 성과 가 계획대비 적정 한가?	□ 진단결과 : 적정 / 부적정 □ 준공일 : □ 지분율 : 00.0000% (최초 지분율 : 00.0000%)				
	※ 적정한 지표의 적절한 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, 성과목표 달성을 인정. 출자회사가 제시한 지표가 부적절하거나, 목표치가 과소할 경우, 달성 불인정	□ 투자금 : 000억원 (최초 투자금 : 000억원) □ 출자목적 ○ □ 주요사업성과 계획 대비 적정성 ○ 사업성과지표(출자목적과 관련지표) - 출자목적에 대한 활동내용 및 수익 창출현황 등 ○ 주요사업성과 -				
	• (건설 중 출자회사) 사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? ※ 계획보다 1년 이상	□ 진단결과 : 정상추진 / 지연 □ 준공예정일(출자 당시 준공예정일) : □ 출자목적 ○				
	지연된 경우 자동 적으로 성과불인정	□ 계획대비 공정률(추진률) ○				
2. 출자회사 재무건전성	• 현재 재무상황이 건전한기?	□ 진단결과 : 건전 / 취약 □ 3년간 당기순이익 및 자본 잠식률 □ (단위 : 천원)				
	 ※ 3년 이상 연속 적자 또는 자본 잠식상태인 경우,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 	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당기				
	• (건설 중 출자회사) 재무 건전성이 계 획된 적자나 자본 잠식 이상으로 훼 손되었는가?	□ 진단결과 : 정상 / 취약 □ 계획대비 당기순이익 (단위 : 천원)				

진단항목	세부내용	진단기준 및 방법				
		□ 계획대비 자본잠식률 (plot alon)				
		(단위 : 천원)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				
	※계획보다 재무건	자본금				
	※계획모다 재구신 전성이 악화되었	계획 자본총계				
	을 경우 취약한	자본잠식률 % % %				
	것으로 간주	자본금				
		실적 자본총계				
		자본잠식률 % % %				
3. 사업계획의		<u> ※ 자본잠식률 = (자본금 - 자본총계) / 자본금</u>				
5. 사립세력의 적정성						
3-1. 주요사업 성과관리	•시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, 우리 공사의 출자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? •새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성과가 출자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?					
3-2. 재무전망	• 새로운 시업계획에 따라 시업을 수행 했을 경우 향후 재 무전망은 긍정적인 기?	□ 진단결과 : 적정 / 부적정 □ 향후 재무전망 ○ ※ 적자 기업의 경우 3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, 5년 내 자본이 원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경우 재무적 회복 가능성 인정, 단,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감안 가능 (작성 후 삭제)				
4. 인력교류 및 계약의 적정성						
4-1. 인력교류 적정성	•출자회사가 우리 공사 출신 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, 적법 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가? •고용하거나 지원 받은 인력에게 적 절한 임무를 부여 하였는가?	□ 진단결과 : 적정 / 부적정 / 해당없음 □ 인원현황 ○ 출자회사 총인원 : 00명 - 공사 파견·퇴직인원 구분 성명 직위 파견기간 공사 퇴직일 파견 00.00.00~00.00.00 퇴직 □ 인력지원 절차 ○ 관련 법령 및 정부가이드라인, 모회사 관련 규정 준수				

진단항목	세부내용	진단기준 및 방법		
		- 사장, 상임감사 :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- 기타 퇴직자 : 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심의 - 파견 및 전출직원 : 대외파견직원선발 및 관리지침 준수여부 □ 모회사 출신직원의 수행업무의 적정성 ○		
4-2. 모회사간 계약의 적정성	•출자회사는 우리 공사와 출자나 또는 설립목적에 적절한 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는가? •출자회사는 우리 공사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?	□ 진단결과 : 적정 / 부적정 / 해당없음 □ 모회사와의 거래내역(최근 3년간) ○ 거래내역 ○ 출자목적 대비하여 거래수준 적절성 - □ 모회사와의 지원내역(최근 3년간) ○ 지원내역 ○ 모회사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받는지 여부		

출자회사 경영진단 조치방향

 츠키모저 다서	시업계획 적절성, 재무전망 건전성	인적교류 및 계약 적정성	조치방향			
출자목적 달성, 재무건전성			지배력 有		지배력 無	
			지분처분가능	지분처분불가	지분처분가능	지분처분불가
출자목적 미달성 or 재무건전성 부적정 (×)	사업계획 부적절 or 부정적 재무전망 (×)	-	즉각적인 출구전략 마련	점진적인 출구전략마련 (최소한의 경영개선, 타주주 협상 후 매각 등)	즉각적인 출구전략 마련	점진적인 출구전략마련 (투자손실 최소화노력, 타주주협상 후 매각 등)
출자목적 달성 & 재무건전성 적정 (○)	사업계획 부적절 or 부정적 재무전망 (×)	-	출자 유지 여부 분석 후 - 유지시 : 경영개선계획 수립 - 폐지시 : 출구전략수립(정상화 불가 유형으로 처리)		출자 유지 여부 분석 후 - 유지시 : 출자유지 - 폐지시 : 출구전략수립(정상화 불가 유형으로 처리)	
출자목적 달성 실패 or 재무건전성 부적정 (×)	사업계획 적절 & 긍정적 재무전망 (○)	-	출자회사 시업계획 실행		출자유지	
출자목적 달성 & 재무건전성 적정 (○)	사업계획 적절 & 긍정적 재무전망 (○)	인적교류 및 거래 부적정 (×)	부적절한 교류 방식, 규모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		출자유지	
출자목적 달성 & 재무건전성 적정 (○)	사업계획 적절 & 긍정적 재무전망 (○)	인적교류 및 거래 적정 (○)	출자유지		출자유지	